

파주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년 2월 12일

발의자 : 차익준의원외 2인

☐ 제안이유

-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거 '96. 12. 31일 공포됨에 따라
-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현행제도중 일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“현지교통비의 명칭”을 “일비”로, “숙박비”를 “숙박료”로 하고, 국내여행시 의장, 부의장,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숙박료의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코자 한다. (안 “별표1”)

파주시 조례 제 호

파주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(별표1)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별표 1 】

국내여비 지급단가표(제4조 제2항 관련)

지급기준액 구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일 비 (1일)	숙박료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의장 · 부의장	1등급	2등급 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41,000	25,000
의 원	2등급	2등급 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19,500	18,000

비 고 : 1. 파주시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(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)이나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철도운임 구분표충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(단위 :)

현		개 정 안						
(별표1)		(별표 1)						
지급기준액	구 분	철도	선박	항공	자동차	일 비	숙박료	식비
		운임	운임	운임	운 임	(1일당)	(1야당)	(1일당)
의 장 · 부·의 장	의	1등급	2등급	정액	정액	10,000	41,000	현행
		원 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10,000	19,500	현행